

중 국

[판례 분석]

온라인 스토어 상품에 사용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2026. 07. 29.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개나 별과 같은 일반적인 소재 또는 공공 영역의 요소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배열·조합한 표현에 창작자의 개성이 구현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미술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을 허락 없이 상품에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시·판매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1. 현황

중국에서는 샤오홍슈와 더우인 등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를 결합하여 다양한 도안 및 이미지를 의류와 잡화 등 상품에 적용해 판매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국가판권국에 따르면 2025년 작품저작권 등록 약 749만 건 가운데 미술작품은 476만 6,060건으로 63.60%를 차지하였음. 이는 미술저작물 등록이 중국의 작품저작권 등록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주며 온라인 상품 도안의 권리보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함. 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와 실물에 인쇄된 도안이 동시에 문제되므로 권리 귀속과 저작물성뿐만 아니라 게시·인쇄·판매 행위가 각각 어떠한 저작재산권과 관련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최근 <허베이성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전형사례(2025년)(河北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典型案例)(2025年)>의 4번 사례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창작된 미술저작물의 창작과정과 권리 귀속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 해당 작품의 독창성과 저작권 귀속을 인정하고 이를 사용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무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음.¹⁾

본문에서는 두 개의 도안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권리 귀속과 독창성이 인정되고 다른 하나는 권리 귀속의 입증 부족과 독창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가 부정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등록증의 증거력, 공공 영역 요소의 조합에 요구되는 최소 창작성, 온라인 게시·판매 행위의 저작권 침해 판단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봄.

1) 최고인민법원,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5603.html>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6)粤0604民初8154号	
관할 법원	1심	광둥성 포산시 찬청구 인민법원(广东省佛山市禅城区人民法院)	
당사자	A 씨		1심: 원고
	B 상점		1심: 피고
핵심 쟁점	1심	1. A 씨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두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B 상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상점의 법적 책임	
판결 결과	1심	1. A 씨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두 작품 중 하나는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2. B 상점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3. B 상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3,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0조, 제52조,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제(1)항		
최종 판결일	2026년 5월 8일		

(1) 사건 개요

개인 디자이너인 A 씨는 2024년 7월 1일 격자무늬와 선으로 표현한 개 이미지(이하 “사건 도안 1”이라 함)를 창작하여 2025년 2월 19일 X SNS 계정에 업로드하였고, 같은 해 2월 20일 사건 도안1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다만 등록증에는 최초 발표 여부가 ‘미발표’로 기재되어 있었음. 또한 A 씨는 2025년 1월 8일 크기가 서로 다른 별들을 분산 배치한 이미지(이하 “사건 도안2”라 함)를 창작하고, 2025년 4월 5일 X SNS 계정에 업로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았음.

한편 B 상점은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개 도안이 그려진 잠옷 상품(이하 “분쟁 도안 상품 1”이라 함)과 별 도안이 그려진 잠옷 상품(이하 “분쟁 도안 상품2”라 함)을 판매하였음. A 씨는 B 상점이 판매하는 두 종류의 분쟁 상품이 사건 도안1 및 사건 도안2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당 분쟁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B 상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분쟁 도안 상품1과 분쟁 도안 상품2를 무단으로 판매한 B 상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B 상점은 A 씨가 두 종류의 사건 도안의 저작권자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 도안의 독창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A 씨가 사건 도안1과 사건 도안2에 대한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인정 여부
- ② B 상점이 사건 도안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③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상점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저작물 및 저작권 귀속 인정

① 사건 도안1

사건 도안1은 그 조형과 도안 및 조합의 표현이 저작자의 선택과 판단 및 독특한 개성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사건 도안1은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미적 의미를 지닌 지적 성과이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함.

권리 귀속에 관하여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 제1항은 “저작권과 관련된 초고와 원본 및 합법적인 출판물과 저작권 등록증 및 인증기관의 증명과 권리취득계약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A 씨는 사건 도안1의 저작권 등록증 등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를 뒤집는 반대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 씨에게 사건 도안1의 저작권이 귀속됨이 인정됨.

② 사건 도안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독창적인 표현이며 이러한 독창성은 형상, 도안, 색채 등의 독특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지적 창작과 미적 선택을 반영해야 함. 사건 도안2는 크기가 서로 다른 몇 개의 별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별은 공공 영역에 속하는 요소이며 그 배치 방식 역시 개성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독창성이 결여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권리 귀속에 관해서는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 초고가 A 씨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저작권 등록증 등 이를 보강할 다른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령 해당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저작권이 A 씨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2) 저작권 침해 여부

B 상점은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개설된 온라인 스토어로서 분쟁 도안 상품1과 분쟁 도안 상품2가 해당 상점에서 전시되고 판매되었음. 이 중에서 사건 도안2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

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도안1과 분쟁 도안 상품1의 이미지만을 서로 비교하였음. 그 결과 양자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함. 따라서 B 상점이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A 씨의 허가 없이 분쟁 도안 상품1을 전시하고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3) 법적 책임

A 씨의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는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함. 그러나 분쟁 도안 상품1 폐기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 상점이 보유한 해당 분쟁 상품의 실제 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청구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해서는 A 씨의 실제 손실과 B 상점의 위법소득 및 사건 도안1의 통상적인 사용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함. 이에 대해 사건 도안1의 창작 난이도와 인지도가 모두 높지 않다는 점과 B 상점의 침해 상황 및 A 씨가 주장한 합리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 상점은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총 3,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3. 판례분석

1) 저작권 등록증의 증거력과 창작과정 자료의 보강 필요성

본문 판례에서 두 사건 도안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권리 귀속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차이였음. 사건 도안1에는 저작권 등록증이 제출되었고 반대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A 씨의 권리 귀속이 인정되었음. 반면 사건 도안2는 관련 초고나 원본 파일이 A 씨에게 귀속된다는 자료가 없고 저작권 등록증 등 보강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음. 이는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증이 없는 경우 권리 귀속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기능한다는 의미임.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도 창작과 동시에 보호될 수 있으나 소송에서는 창작자와 창작 시점을 별도의 증거로 입증해야 함.

다만 저작권 등록증이나 웹사이트의 권리 표시가 항상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 본문 판례에서 원고는 2025년 2월 19일 X SNS 계정을 통해 사건 도안1을 공개 발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저작권 등록증에는 최초 발표일이 '미발표'로 기재되어 있었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저작권 등록증과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저작권 귀속을 인정하였음.

따라서 등록증의 내용과 실제 게시 기록을 일치시키고 원본 파일, 수정 이력, 중간 시안 등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워터마크가 찍힌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²⁾에서도 최고인민법원은 권리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저작물에 찍혀있

2) 최고인민법원 지도사례 제224호,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421202.html>

는 워터마크나 수권 성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그러므로 권리자는 등록증을 창작과정 자료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증거 사슬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2) 공공 영역 요소의 조합에 의한 미술저작물의 독창성

공공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사건 도안1은 개, 격자무늬, 선이라는 흔한 요소를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인 조형과 문양 및 조합 관계에 창작자의 선택·판단·개성이 드러난다고 보아 미술저작물성이 인정되었음.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개나 격자무늬라는 관념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 선의 방향, 비례, 배치와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것을 잘 보여줌. 이에 반해 사건 도안2는 크기가 다른 별 몇 개를 분산하여 배치한 배열에 불과하고, 별 자체는 공공 영역의 요소이며 그 배열에서도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 독창성이 부정되었음. 이 두 도안의 독창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 것은 공공 영역 요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의 조합 및 배치 자체에 독창성이 존재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함.

중국 곡예기술단의 공연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이를 다른 곡예 기술 공연으로 구성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³⁾에서 최고인민법원은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통상적인 곡예 동작 자체 또는 이를 단순히 조합·반복한 표현은 독창성이 부족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개별 동작의 배열, 연결, 편성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적 선택과 예술적 표현이 반영된 경우에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별이라는 공공 영역 요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별 배열의 보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별의 개수, 크기, 간격, 색채, 여백과 전체적인 시각적 흐름 등에 개성적 선택이 나타나면 그 전체 조합 및 배열은 독창성을 가질 수 있음. 다만 본문 판례는 사건 도안2의 구체적인 표현을 세분화하여 그 조합 및 배열이 왜 독창성을 결하였는지 설명하기보다 '크기가 다른 별이 분산되어 있음'이라는 비교적 간략한 이유로 독창성을 부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A 씨가 해당 도안의 초고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저작권 등록증 등 이를 보강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해당 도안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장을 배척한 것을 수긍할 수 있음.

3)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의 범위를 확정된 후, 피고 상품에 사용된 표현이 해당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비교해야 함.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분쟁 도안 상품1에 표시된 개 이미지와 사건 도안1을 비교하여 "양자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이는 개라는 소재나 격자무늬라는 개별 요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결

3) 최고인민법원, <http://gongbao.court.gov.cn/Details/a9838f3aa6b7043b78e56d18c7f7a7.html>

합된 구체적인 형상, 배열, 조합 방식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판단임.

사건 도안1에서 보호되는 대상은 개라는 동물 이미지 자체나 격자무늬라는 일반적 표현 요소가 아님. 보호 대상은 개 형상의 구체적인 형태, 선의 표현 방식, 격자무늬의 배치, 각 요소 사이의 결합 관계 등 창작자의 선택과 판단이 반영된 전체적인 시각적 표현임. 따라서 미술저작물이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요소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배열과 조합 방식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침해된 권리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B 상점이 무단으로 분쟁 도안 상품1을 온라인 스토어에 전시·판매한 행위 전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B 상점의 행위가 여러 저작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도안을 무단으로 상품에 인쇄·제작한 주체에게는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⁴⁾ 해당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는 발행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스토어 판매 페이지에 해당 상품 이미지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그 이미지를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

결국 본문 판례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공공 영역 요소를 사용한 미술저작물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보호 대상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며, 침해 판단은 전체적인 시각 효과와 창작적 표현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줌. 또한 상품 제작, 온라인 게시, 판매 과정에서 각각 다른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구분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저작권 등록증이 반증이 없는 한 권리 귀속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과 공공 영역 요소를 사용한 미술저작물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보호 대상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 소재의 형상, 배열, 색채 및 조합에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6)粤0604民初8154号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421202.html>
- <http://qonqbao.court.gov.cn/Details/a9838f3aa6b7043b78e56d18c7f7a7.html>
-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5603.html>

4) 판결문에서는 B 상점이 분쟁 상품을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음.